

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5년 3월 19일 (수) · 주간제12호 · 통권 제1719호 · 법인세 신고도움자료 수록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3/19 통권 1719호

CEO·CFO·COO 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신고도움자료 꼭 확인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기업 거버넌스의 이해(1): 목적과 방향
-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함
-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신고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남의 논문 베껴 제출하고 R&D 세액공제?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위탁가공을 위해 대가없이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 익금산입의 쟁점항목 10가지(유권해석 등)>

항목, 구분	손금, 익금 등	개요, 내용, 적용방법
임직원할인금액	손금산입	해당회사 임직원 할인액 + 계열사 임직원 할인보전액
근로자 출산양육지원	손금산입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비로 반영한 경우(근로소득합산안함)
사내 근로복지기금	손금산입	회사 내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내국법인이 출연하는 금품
임원퇴직보험료	손금산입	납입보험료 중 해지환급예상액은 자산처리, 기타부분액은 손금산입
상여소득세대납	손금불산입 대표상여처분	법인대표이사에 귀속처분된 상여금의 소득세 해당액 납부
임원사망 상속인보험금	손금불산입	임원상해보험가입 관련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처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손금산입	법인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비자발적 퇴직자 포함)
인테리어설비 폐기손	손금산입	새로운 인테리어 설치하면서 폐기처분한 기존 인테리어 잔존액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법령상 장애인 고용촉진 의무 불이행의 제재금이므로
퇴직금 포기액	손금, 익금산입	대주주 임원이 포기한 퇴직금을 퇴직소득과세하며, 해당액을 익금산입하되 관련 퇴직금을 손금산입대응시킴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진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19호 / 주간 12호

2025. 3. 19.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 익금산입의 쟁점항목 10가지(유권해석 등)	표지
CEO의 경영산책	기업 거버넌스의 이해(1) : 목적과 방향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 파견근로자 상여지급금 - 매출인식 기준(사업장 귀속) - 매출 단가 할인 등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은 법인등 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함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소득세법 개정과 차량 할인 과세 기준 주요 내용 - 국회 계류 중인 증여세 관련 개정안	9 10
직장인 Survival	대화 중 방어 심리를 자제하는 법	11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 당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부가-619, 2024.09.12) -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하 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면세반출승인신 청 등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법규부가-1467, 2024.07.31)	12 13
세정 뉴스와 해설	정부, 상속세 개편 추진...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으로 부담 완화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위탁가공을 위해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12
세무정보	-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신고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남의 논문 베껴 제출하고 R&D 세액공제?	15 29 32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 정환율	48

기업 거버넌스의 이해(1) : 목적과 방향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거버넌스는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층과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을 위한 구조를 마련하기 전에 기업의 사명, 비전, 가치, 목표를 정립하여야 한다. 기업의 목적과 사명은 임직원이 일사불란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Guidelines for governance, 1st Edition 2021, IIA Norway., pp. 7-10.

(1) 기업의 사명

기업의 사명(Mission)은 기업의 존재 이유와 운영과 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기업의 사명은 기업의 비전, 가치, 목적, 전략의 기초가 된다. 기업의 사명을 정하는 것은 오너와 CEO의 몫이다. 실무적으로는 기업의 사명은 기업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달성해야 할 요구 사항을 정의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비전(Vision)

기업의 비전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아이디어로 기업의 목표와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된다. 비전은 기업이 달성하려고 소망하는 미래의 이미지 또는 상태를 표현한다. 예를 들면 산업의 리더로서의 추구하는 위치,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과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위치, 사회에 기여하고 존경과 신뢰받는 기업 등이다. 위와 같은 비전은 기업의 사명과 일관성을 갖고 구체적인 기업의 목적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기업의 비전은 방향을 제시하고 영감을 주어야 하며, 포용적이고 통합적이며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

(3) 가치(Values)

기업이 창출 하는 또는 지켜야 할 가치로서 기업 문화 형성의 기반이 된다. 위와 같은 가치는 일상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 거버넌스 가이드에서 가치는 핵심 가치, 윤리, 사회적 책임, 투명성을 포함한다. 이는 임직원이 integrity을 갖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형성하도록 촉진한다.

● 핵심가치 (Core values)

핵심가치는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이다. 기업의 핵심가치가 어떻게 정의되고, 소통되고 준수되는가가 기업의 문화의 핵심적 관건이 된다. 핵심가치 선언문은 기업이 내부와 외부 경영환경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 기업의 핵심가치는 기업이 소망하는 문화와 행동을 정의하여야 한다. 임직원이 핵심가치를 생활화하도록 (live up) 격려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핵심가치에 벗어난 행동을 회피하도록 체계화하여야 한다.

● 윤리와 사회적 가치(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은 윤리적으로 책임있게 행동하여야 하며, 법규 준수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여야 한다. 이를 생활하는 것은 기업의 명성과 목적 달성, 경쟁력과 장기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사회와 CEO는 윤리에 주의 깊은 접근과 단기적 재무적 이해와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균형을 가져야 한다. 실무적 관점에서 기업은 명확한 윤리적 정책과 지침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가치 창출과 외부 요구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예들 들면,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정이나 비윤리적 행동, 성적 희롱 및 인종적 차별 등의 구체적인 예방, 적발, 대응 활동에 대한 것이다. 또한 조직의 현안과 문제 제기자의 보호를 위한 내부고발 보호체계의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 투명성 (Transperancy)

투명성은 기업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how decision are made), 기업 활동이 어떻게 수행되는가(how activities are performed), 달성된 결과(the results that are achives)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기업의 이해 관계자의 기업의 발전에 대한 이해와 의사결정에 대한 기초로서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실무적 관점에서 기업은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 자료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질, 적시성, 무결성(integrity)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계 법규 등에 의한 기밀정보 제외)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과 임직원이 의사결정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목적과 전략 (Objectives and stratagies)

목적과 전략은 기업의 비전과 가치를 달성하도록 뒷받침하여야 한다. 기업의 목적은 소망하는 미래의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목적과 경영 목표로 구성된다. 전략적 목적은 기업의 비전과 가치에 기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달성할 것을 제시하게 되며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다. 전략을 개발할 때 현재 경영 환경에서 기업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적 관점에서는 SWOT-Analysis 등이 요구된다. 전략은 본질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으로 가기 위한 장래의 과정에 대한 선택을 기술하는 것이다. 경영목표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단기적 관점으로 경영층에 의해 승인된다. 전략적 목적에 비해 보다 가시적이고 구체적이다. 경영목표는 전사적과 각 부문별 실행계획(Action plan)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전략적 목적과 경영목표는 주기적으로 평가되어 수정되어야 한다.

실무적 관점에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명확한 전략적 목표를 정의하여야 한다.

-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 가치와 자산의 보호,
- 글로벌 관계 법규의 준수와 투명한 재무 및 사업보고
- 기업의 경쟁력 분석 (예 : SWOT분석 강점, 약점, 위협, 기회
- AI을 활용한 기업의 다양한 발전 방향과 시나리오(리스크를 포함한)
- 기업의 핵심성장 요소(Critical success factors)
-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계획의 수립 운영
- 경영 목표와 실행계획 수립 운영

최근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목적과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 우리 기업의 사명과 비전은 임직원에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고 있는가?
- 우리 기업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 우리 기업이 소망하는 기업문화가 임직원에 의해 생활화되고 있는가?
-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전략과 경영목표는 적합성은?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Q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인 익월10일 이후에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10월 세금계산서가 11월 13일에 발행되었고 11월 작성일자 세금계산서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에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잘못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동일 신고기간내에 수정 취소되어 결과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으면 가산세는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견근로자 상여지급건

Q 파견 근로자 상여 직접 지급 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파견근로자에게 연말상여로 300만원 정도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려고 합니다.
 2011.08.18. 비슷한 문의 내용의 답변에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급여는 파견사업주에 통보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만약 파견 사업주에 근로소득 금액으로 추가 금액을 신고 요청 한 뒤 지급할 경우 사용 사업주는 위 비용에 대하여 증빙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A 파견 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려는 경우는 파견사업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받고 해당 상여를 지급하시면 되며, 아니면 귀사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직접 지급하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매출인식 기준(사업장 귀속)

Q 매출인식할 사업장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지점(사업자번호 별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지점의 보관 창고 공간 부족으로 본점(사업자번호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여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지점에서 본점으로 물류이동시 외주업체(운송업체)에 물류비를 지급하고 제품을 운송하며,

이후 거래처에 제품 공급시 본점에서 거래처까지의 물류비를 지급하고 공급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매출인식(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점사업자번호로 해야 할지 본점사업자번호로 해야 할지 확인코져 합니다.

A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으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로 각각의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점의 제품을 단순히 본점의 창고에서 구분하여 보관하다가 지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져 해당 본점창고에서 출고되는 경우라면 지점이 공급자가 되므로 지점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매출 단가 할인등

Q 당사 제품은 주문자생산방식으로, 고객 요청에 의해 제작하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동일한 제품은 없으나, 제품 사이즈별 기술적인 면에서 몇가지 제품군을 나누고는 있습니다.

각 제품별 단가가 상이하니 대략 예를 들어서 1장당 가격이 다음과 같다고 하면,
A: 100 / B:90 / C:80 / D:70 / E:60 / F:50

1장당 판매는 상기 금액으로 견적 및 판매를 하고 있으나, 대량 판매 독려를 위해 1set(10장이상) 이상을 구매하면 전체 금액을 5%로 할인된 금액으로 견적 및 판매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1. 회계상 처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2. 법인세법상 모든 고객이 아닌 특정 고객에 대해서만 1set 판매시 할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고객과 특수관계자는 아니나 혹시 매출할인이 접대비 처리될 수도 있나요?
3. 부가가치법상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물품의 품질, 수량, 인도조건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깎아주는 것은 에누리라고 하고, 에누리 금액은 법인세법상 매출액에서 감액하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에누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2. 특정고객에게만 에누리를 적용하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것은 과세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세법상 소득처분은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로 처분하게 되는데, 사내유보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며, 사외유출된 금액은 해당 귀속자의 과세소득으로 납세의무를 지우게 된다.

이러한 소득처분에 있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고 있다.

대표자의 상여로 인정되면 그 소득금액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는 그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대표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하면 향후 대표자가 그 소득을 법인에 환원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바, 경감되거나 배제되지는 않는다(대법 85다사 1548, 88.11.8).

물론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득의 귀속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불분명한 소득을 대표자에게 무조건 상여처분을 하는 이유는 법인의 모든 상황에 대해 최종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다고 보며, 또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사외유출소득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책임을 대표자에게 물음으로써 그 귀속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말하는데, 세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대표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대표자가 아닌 객관적 증빙없는 한 등기부상 대표자를 말함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말한다. 즉,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

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법기통 67-106...19)

그러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즉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대표자가 되는 것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따라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하더라도 해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명 소득을 그 등기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대법 88누 3802, 89. 4. 11).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시는 각각 구분 귀속된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다. 사실상의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법기통67-106...17).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등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명목상의 대표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직무를 행사한 자를 대표자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소득세법 개정과 차량 할인 과세 기준 주요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2월 28일 공포, 종업원 할인 세법 개정에 따른 임직원 차량 구매 할인 근로소득 과세 시행
임직원 차량 할인 과세	자사 및 계열사 임직원이 할인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비과세한도 초과 시 과세
비과세 한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2년간 재판매 금지
과세 방식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연간 모든 구입 차량의 시가 합산 기준
시행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비과세 한도 초과분 급여 반영
기타 사항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 적용 제외 전망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개편 방안

	현행	개정
과세 방식	유산세	유산취득세
과세 대상	사망자의 전체 유산	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
인적공제	자녀 등	일괄공제(5억) or 기초공제(2억) + 추가공제 • 직계존비속: 기본공제(5억) + 추가공제 • 그 외: 2억원 + 추가공제
	배우자	• 기본: 실제 상속분 • 최저: 5억원(상속 없어도 공제) • 최대 한도: min(법정상속분, 30억원)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기타	-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10억원



국회 계류 중인 증여세 관련 개정안

법안명	대표발의	증여세제 관련 주요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물가변동분 반영 배우자 증여공제액 6억원 → 12억원 직계존비속 증여공제액 5천만원 → 1억원 미성년자 증여공제액 2천만원 → 4천만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액 1억원 → 2억원
	최은석	배우자 증여공제액 6억원 → 12억원



가업상속공제 세부 요건

구분	세부 요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필요
별류업 우수기업	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② 5년간(2025~20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 + 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 이상일 것
스케일업 우수기업	① 5년간(2025~20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둘 중 하나를 충족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5% + 연평균 증가율 5%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3% + 연평균 증가율 10% ② 5년간(2025~2029년) 고용을 유지할 것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	①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기업이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 -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 - 기회발전특구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대화 중 방어심리를 자제하는 법

대화를 하다 보면 간혹 방어심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분노 혹은 비난하는 듯한 말을 하면 대부분 자동적으로 상대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동화된 반응에서 벗어나 자신의 방어심리를 알아차리고 자제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선의, 그리고 동기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전문가이자 [당신 왜 사과하지 않나요?]의 저자인 해리엇 러너가 들려주는 [대화 중 방어심리를 자제하는 법 12가지]입니다. 방어심리를 자제함으로써 상대의 말을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입니다.

1. 자신의 방어심리를 인식한다

비난을 받으면 누구나 즉각 방어심리가 작동하게 마련이다. 이때 자신의 방어심리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거리를 둘 여지가 생긴다. 상대의 말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방어적으로 귀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부정확한 점이나 왜곡, 과장된 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라.

2. 심호흡을 한다

방어심리는 신체에서 먼저 시작된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이 긴장되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로 변하는 것이다. 이럴 때는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몸이 이완되도록 한다.

3. 오로지 이해하기 위해 듣는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겠다는 생각으로 상대의 말을 들어라. 상대의 말을 가로막거나 반박하거나 부인하거나 정정하지도 마라. 또 당신 자신에 대한 비난도 삼가라. 정당한 주장이 있다면 다음 기회, 예를 들면 상대가 방어전략 없이 대화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다시 내놓으면 된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위탁가공을 위해 대가없이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부가-619, 2024.09.12

질 의

- 주식회사 ***** (이하 "신청법인")는 여성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제품을 생산함
 - 신청법인은 국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신청법인의 명의로 재수입하여 홈쇼핑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함
- 질의
-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이하 "원재료 무상반출")하여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원재료 무상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에 해당

서면법규소득-382, 2024.06.13

질 의

- 질의법인은 학교법인 AAA학원 산하 AA대학교의 부속병원(이하 "질의법인")으로 병원의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관 및 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 수당의 지급 시 고용보험법령 등을 준용하여 그 지급액과 한도액을 정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95에 따라 월 150만원을 한도로 75%는 휴직기간 동안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직원이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음
- 질의
-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 괄호안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비과세 되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의 의미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법규부가-1467, 2024.07.31

■ 질 의

- AA(주)(이하 '질의법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인 반제품 AvBlend를 임가공업체에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없이 반출하고,
 -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반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음
 - 임가공업체가 가공한 항공원료 완제품 Aviation Gasoline(이하 "AvGas ")을 미납세 반입해 수출하거나 국내 지상조업사* 등에 판매하고 있음
- * 공항의 지상조업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질의

- 완제품 제조를 위해 임가공업체에 반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대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항공유 제조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법규기본-98, 2024.09.26

■ 질 의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예정신고분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8일 조기 지급...근로자 "힘 내세요"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업이 올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한 뒤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정부, 상속세 개편 추진...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으로 부담 완화

정부가 현행 유산세(estate tax) 방식의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새로운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체계에서는 상속 재산이 클수

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 재산이 분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식이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상속세 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맞춰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의 경우 기존의 일괄공제(5억원) 수준을 유지하며, 형제나 기타 상속인의 경우 2억원까지 공제받도록 했다.

현행 상속세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속인과 수유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각 상속인이 자신의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조세 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대납세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세 대상도 조정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재산에 대해 과세하지만, 앞으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만 전 세계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된다.

◇ 2028년 시행 목표...입법 절차 진행 예정

정부는 이달 안으로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4월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른 행정절차도 조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속세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공정한 세제 운영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논의를 거쳐 세부 사항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것이라는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수정이 가해질지 주목된다.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신고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 국세청, 2025. 3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와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신고도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을 확대하였고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신고도움자료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 또한,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법인에게 신고시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 (신고편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경우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① 고용증대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만원)				구 분	공제액(만원)			
	중소		중견	대기업		중소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장애인 등	1,100	1,200	800	400	청년*, 장애인 등	1,450	1,550	800	400

* 청년 연령 : 15 ~ 34세

-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기업만 공제)
: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

구 분	공제율
상시근로자	50%
청년*, 경력단절여성	100%

* 청년 연령 : 15 ~ 29세

- (자주하는 실수)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2,100여 곳의 법인이 1,400여억 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을 자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주 하는 실수 Top 5 /

【유형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공제

-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에 특별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한 사례

【유형②】 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공제

- 친족·임원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로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사례

【유형③】 공제·감면 적용 순서 착오로 인한 농어촌특별세 과소신고

-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적용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적용 대상부터 먼저 적용하여야 하나 착오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소신고한 사례

【유형④】 사업연도 1년 미만인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계산 누락

- 신설법인 등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환산을 누락한 사례

【유형⑤】 세액공제 이월액 과다 신고

- 이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거나 소멸한 세액공제액을 당해 연도 전기이월세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한 사례

- 한편,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기회로 이용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 고의적 탈세 사례 /

【사례①】 특허권 매입을 가장하여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한 법인

- 특허권을 보유한 법인 중에는 당초부터 법인의 특허권을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양수대금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함

【사례②】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악용한 법인

- 고용위기지역의 조선소에서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물적설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특성을 이용하여 명목상 대표자만 변경하고서도 창업한 것으로 위장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음

【사례③】 법인 소유 주택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에 무상 임대한 법인

- 직원의 사택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법인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등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남

【사례④】 전통적인 탈세 수법을 이용한 법인

-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 신용카드와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전통적인 수법의 탈세 행위도 지속 발생

- 선의의 납세자가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확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검증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하여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 특히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는 신고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데 사용됨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에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신고도움서비스 개요 및 주요 개선사항

□ 신고도움서비스

- (개요) 세제혜택을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도움자료 제공
- (화면 구성)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

<화면 구성 및 제공 자료>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	---------	---------	----------	-------	-------

● **III.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시 유의사항 출력

유형	제공 자료
주요안내	주요지표 분석, 신고시 유의사항·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사항
기업 분석자료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공제·감면 현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신고 참고자료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주주현황
신고 시 유의사항	개별분석·공통분석 자료,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법인별·업종별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주요 개정 세법, 참고할 세법 규정

□ 주요 개선사항

- (신고도움자료 확대·보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를 확대 제공* 하는 한편
 - * 신고도움자료 : ('24년) 414개 유형 → ('25년) 430개 유형(16개 증가)
 -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개별분석 자료의 안내 내용을 구체화하여 안내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였음

□ 신고도움자료 안내

- (모바일 안내) 신고시 유의사항에 개별분석자료가 제공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관련 사항을 직접 제공

참고 2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정사례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공제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 사전 신고안내

- 업종, 소재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고,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수도권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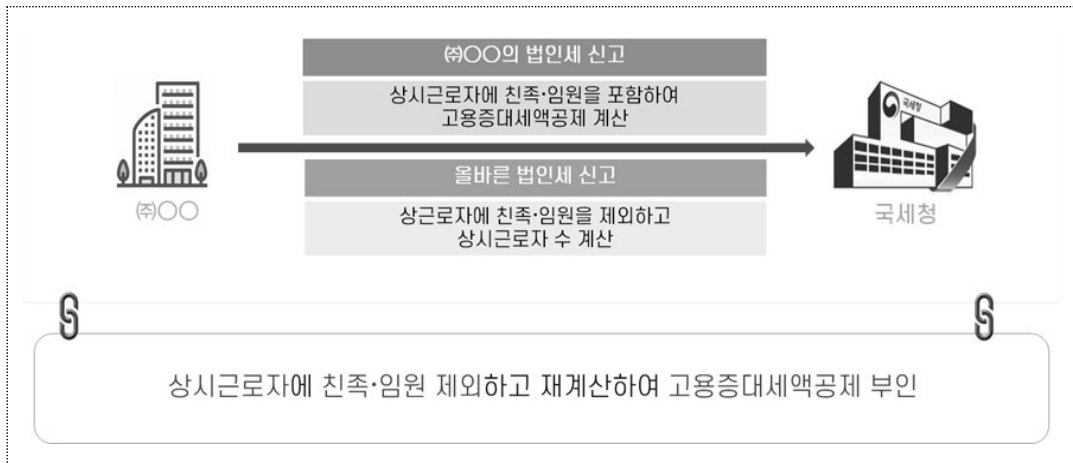
- 당해 연도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기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 30억원)을 초과하여 수도권 소재 중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
⇒ 수도권 소재 중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수정신고 함



2 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 공제

친족·임원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로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부당 공제

- 사전 신고안내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함을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 친족·임원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확인
⇒ 친족·임원을 제외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 공제 전액을 차감하고 수정신고 함



③ 공제·감면세액 적용순서 착오로 농어촌특별세 신고 누락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아닌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부터 공제하여야 하나 착오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소신고

□ 사전 신고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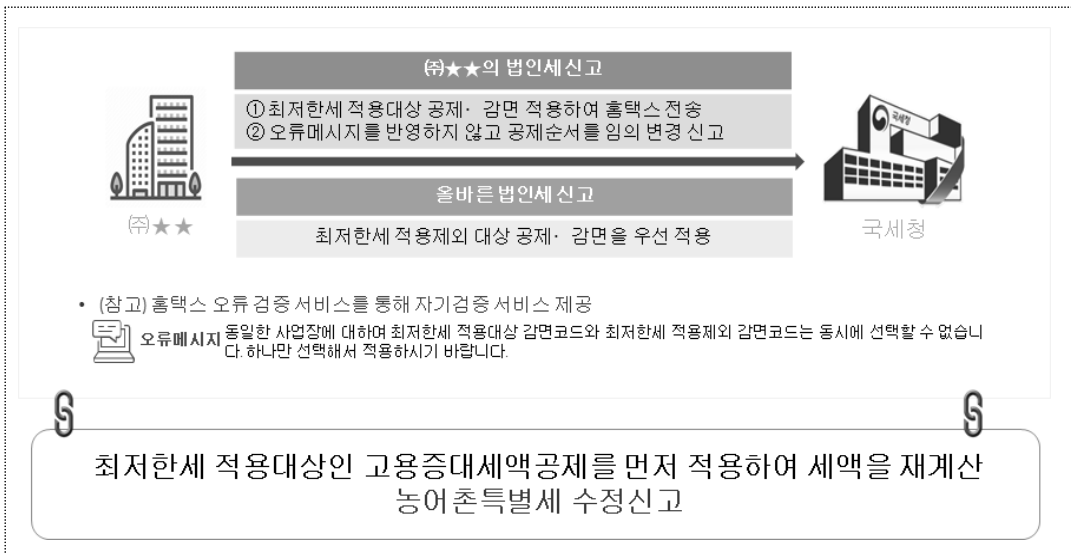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부터 먼저 공제·감면 받아야 하고, 공제·감면 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신고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은 전년도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보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을 먼저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 공제·감면 순서를 잘못 적용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부터 먼저 적용한 것으로 확인
⇒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을 우선 적용하여 세액을 재계산한 후 농어촌특별세 수정신고 함



4 사업연도 1년 미만인 법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환산 누락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환산을 누락하여 법인세 과소신고

□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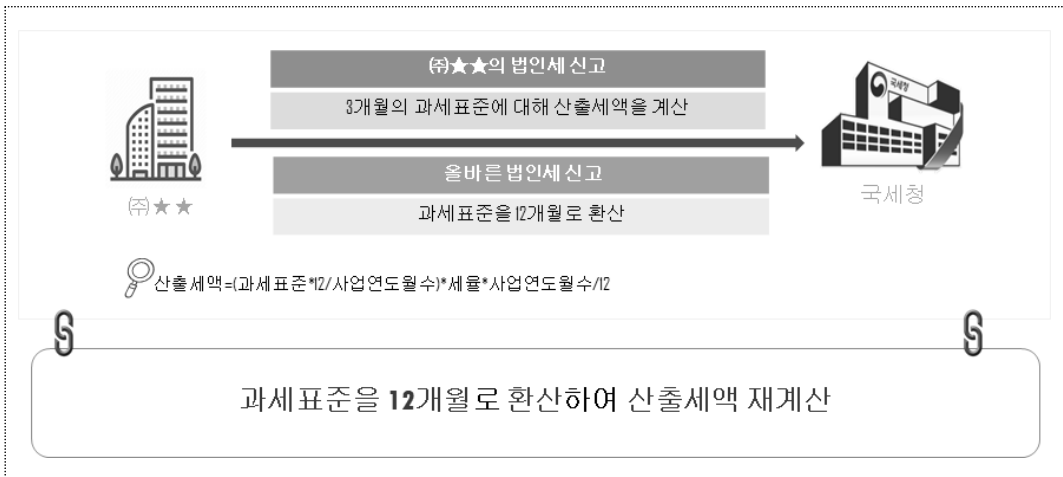
- 신설법인 등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은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함(법인세법 제55조)

□ 신고내용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은 '23년 10월에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으로서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
⇒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재계산 법인세를 수정신고 함



5 세액공제 이월액 과다 신고

직전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거나 소멸한 세액공제액을 당해 연도 전기이월세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

□ 사전 신고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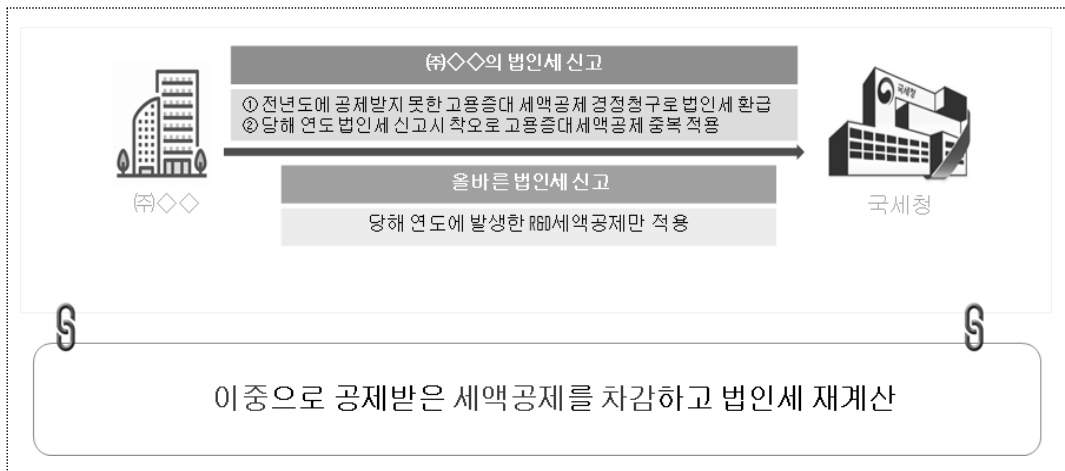
- 이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이월액이 경정청구, 수정신고, 경정 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안내

□ 신고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은 전년도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해당 연도 발생한 R&D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 전년도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여 전액 공제받았으나 착오로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한 것으로 확인
⇒ 이중으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수정신고 함



⑥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

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후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

□ 사전 신고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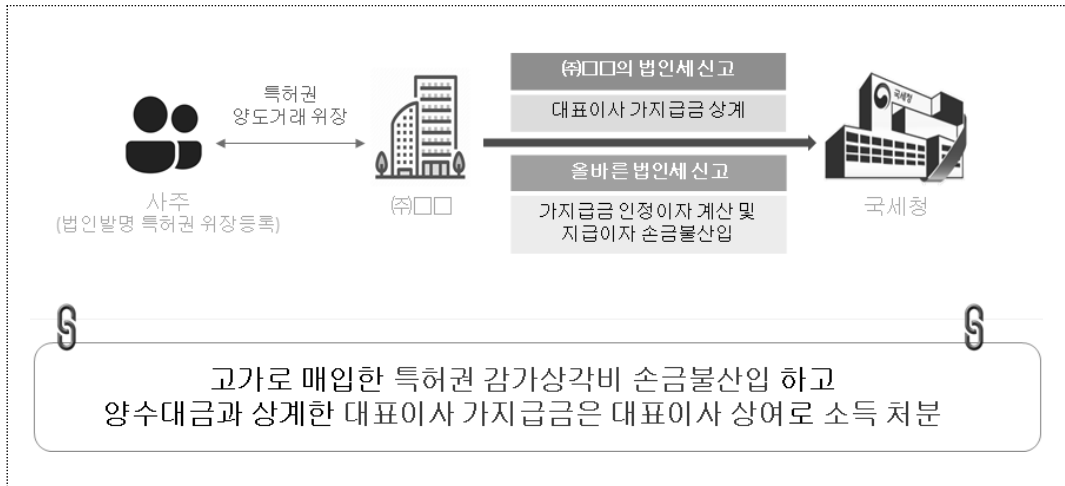
-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신고하도록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함

□ 검증결과

-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은 당초부터 법인 소유의 특허권으로서 특허권 매매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한 허위 거래로 확인
⇒ 고가로 매입한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고 양수대금과 상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 처분



7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부당 적용

고용위기지역 내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명의상 대표자만 바뀌서 창업한 것으로 위장하여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 사전 신고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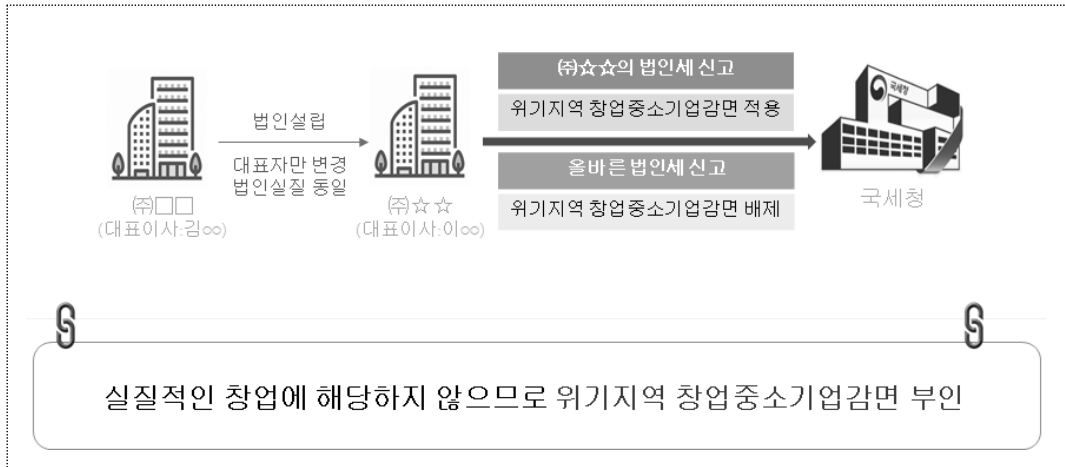
- 위기지역에 창업한 법인은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100%(이후 2년간 50%)가 감면되므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신고하도록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고용위기지역에서 선박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주)☆☆은 '21년 법인 설립된 후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 사업에 물적설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특성을 이용하여 명의상 대표자만 바뀌서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
⇒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수정신고 함



8 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

직원 사택용 등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

□ 사전 신고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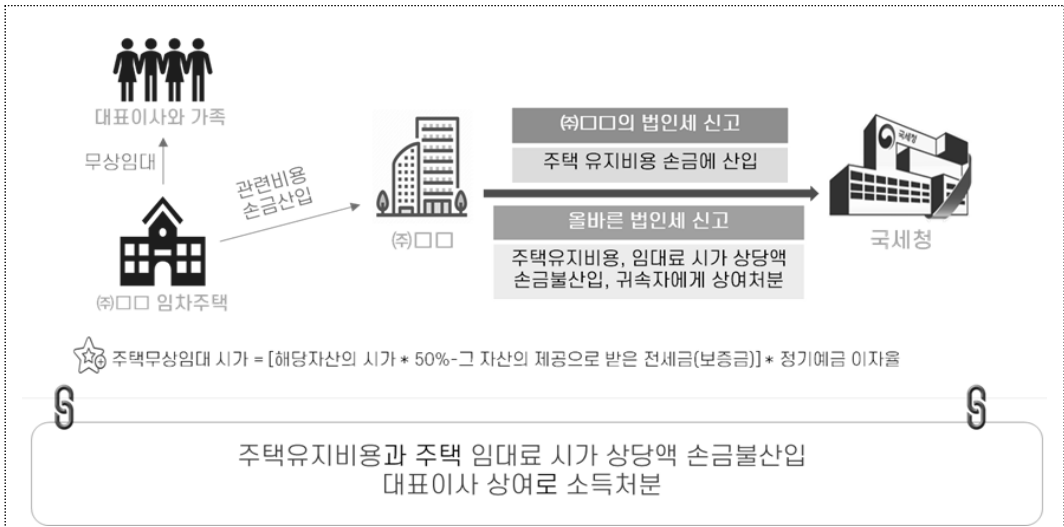
- 법인이 소유·임차한 주택 중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

□ 신고내용

-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은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와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 대표이사와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 주택 유지비용 등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고 주택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상여로 소득처분



9]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지급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 신용카드와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탈루

- 사전 신고안내
 -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와 업무용승용차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전에 안내
- 신고내용
 - (주)★★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 대표이사 배우자의 출·퇴근 증빙, 업무수행일지 등 검토결과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추징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이자비용 과다지급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소득 대비 과다하게 지급한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나 관련 세무조정을 누락

□ 사전 신고안내

-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사전 안내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지급이자 등의 총액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 총액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세무상 감가상각비 + 국외특수관계인 관련 순이자비용

□ 신고내용

- (주)★★은 국외지배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후 전액 지급이자로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 해당 국외지배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국외특수관계인이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로 인해 발생한 순이자비용 총액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

⇒ 소득 대비 과다 지급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추징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국세청, 2025. 3

1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지급 일정

-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 일정을 10일 이상 앞당겨 3월 중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일괄 환급 (기한 내 신고자 중 개별환급 대상자 외)		개별 환급 (기한 후 신고자, 부도·폐업자 등 일부)	
법정기한	단축 일정	법정기한	단축 일정
4. 10.	3. 18	4. 10.	3. 31.

- (일괄 환급)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한 경우 3.18.까지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 (법정기한: 4.10.),
- (개별 환급)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3.11. 이후 원천세 신고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3. 31. 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 (법정기한: 4.10.)
- 근로자별 환급금액은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환급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2025년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이 유보해둔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환급금 지급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 계좌신고

-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있더라도 계좌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 계좌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신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 등 (금융기관을 통해 문의)
-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상위 순서의 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환급계좌 적용 순서 |

- 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계좌
- ② 개별 세목(근로·기타·사업소득 등)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 ③ 모든 세목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 신고한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계좌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이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시일이 소요되니 환급계좌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그 외 유의사항

-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신청이 적정한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채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제기 가능

2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는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부도·폐업상태거나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되어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환급 받기 어려운 상태라면,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해당 기업 근로자는 3. 24.(월)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3. 31.(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홈택스*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화면에서 근로자 본인·회사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손쉽게 신청가능하며, 해당 화면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신청도 가능합니다.
- * 검색창에서 '부도' 검색 시 간편하게 메뉴로 이동하며, 서면신청보다 신속한 검토 가능

부실기업 근로자의 직접환급 신청 시 기재사항

- | | |
|---|---|
| ✓ | 근로자 본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 ✓ |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
| ✓ | '2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총급여, 결정·기납부·환급세액) 및 환급 신청액 |

[부실기업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요건]

-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기업에 해당하여 기업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 (부도)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 ✓ (폐업)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
 - ✓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 해당 기업이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를 완료하여 체납하지 않은 경우

[유의사항]

- 관할 세무서 검토 결과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거나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남의 논문 베껴 제출하고 R&D 세액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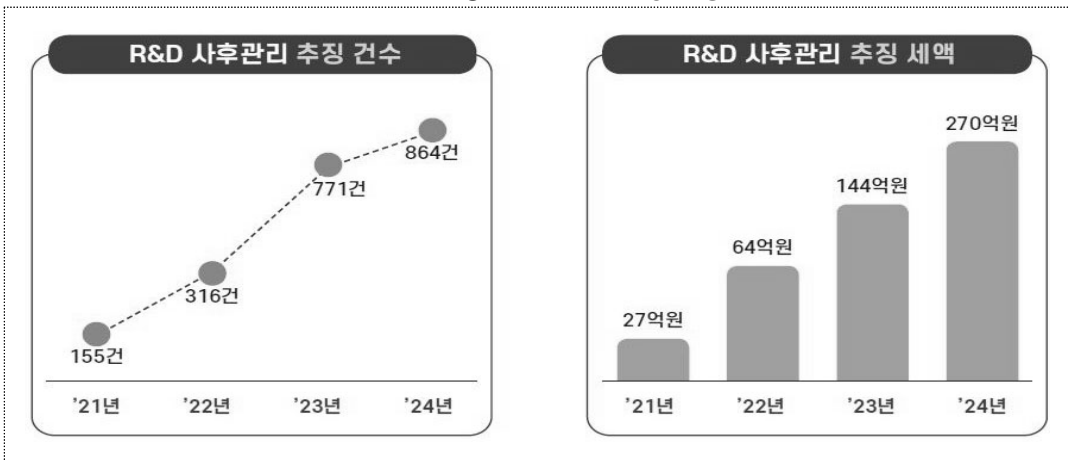
- 국세청, 2025. 3

- 타인 논문 도용 제출, 연구원 허위등록 등 부당공제 864개 기업, 270억 원 추정
- 잘 몰라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심사 적극 활용하세요!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결과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하여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하였습니다.
- 그 결과,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 원을 추징하여 추징실적이 '21년의 27억 원 대비 약 10배 증가하였습니다.

/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 현황 /



□ 특히 '23년부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를 전담하는 본청의 전문심사관과 지방청 담당팀이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연구개발 활동을 집중검증하여 지난해 364개 기업에 대해 116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사례1 타인 논문 등을 도용한 자료 제출하여 연구개발 활동 가장

▶ 불법 연구개발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연구 증거서류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타인의 논문을 복제·인용하고 수치나 사진을 단순 변형·모방하여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며, 컨설팅 업체가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은 기업의 연구노트 등 연구 증거서류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해명자료를 대리 작성해 주거나, 부당공제가 적발되자 컨설팅 대금을 환불해 주는 불법 컨설팅 정황도 포착

※ 위 사례 외에도 타인 논문 등을 단순인용한 사례 다수 발견
/ 타인 논문 단순인용 사례 /

<p>Fig. 4. Result of 1 way ANOVA of distance deviation in three webbody groups.</p> <p>Fig. 5. Result of 1 way ANOVA of angular deviation in three webbody groups.</p> <p>Fig. 6. Color-coded map of deviation between reference data and merged data.</p> <p>Fig. 7. Graph showing the distance and angular deviation of merged library for data.</p> <p>※ (출처) 대한치과 보철학회지 59권 1호, 2021년 1월, 27-35</p>	<p>Company research evidence showing modified figures and photos.</p>
<p><공개된 학술 논문></p>	<p><기업이 제출한 연구 증거서류></p>



사례2 일반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부당 공제

▶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를 세액공제 신청하여 연구 증거서류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연구 전담직원으로 등록한 연구원은 기획, 홍보, 교육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한 강사, 관리직원으로 확인되고 연구개발 활동 수행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실제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사실 확인되어 세액공제 부인

□ 아울러, 고율의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법인을 전수 분석하고 면밀히 검증한 결과, 일반 연구개발 공제율 대신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 69개 기업의 과다공제세액 62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 (일반) 25%, (신성장·원천기술) 30%~40%, (국가전략) 40%~50%

사례3 일반 연구개발을 고율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공제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기]의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후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신청한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증거서류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이 아닌 일반 공제율(25%)이 적용되는 일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과다공제 받은 15%와 연구원 중 주식 10% 초과 보유한 주주인 임원, 관리직원의 인건비 세액공제 부인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검증 외에도 과기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지 않았거나, 연구소 인정 취소된 기업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검증하여 178개 기업에 대해 30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사례4 연구소 미인정 기업이 해명자료 조작하여 제출

- ▶ 연구소 인정이 확인되지 않는 기업의 인정 여부를 해명 요청하여 검증한 결과, 연구소 인정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연구소 인정기관인 한국산업기술협회에서 통지한 자료와 사실관계가 다른 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기업은 연구소 자진취소 후 재인정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액공제 부인

□ 이 외에도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 신청 시 제외하지 않고 과다공제 받은 48개 기업에 대해 1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사례5 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 제외하지 않고 과다공제

- ▶ 정부지원과제를 수행하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은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받아 검증한 결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개발출연금을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세액공제 부인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국세청은 악의적인 부당공제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선의의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 공제 대상 비용 등에 해당하는지 납세자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활동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2021두56510, '24.12.24.) /

- 이 사건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위탁개발한 것인바,
 - 그 목표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어 **舊 조특법§9⑤**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선의의 납세자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지

만, 추후 세무조사나 사후관리를 통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공제세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드리고 있으니, 법인세 신고(3월 말), 소득세 신고(5월 말) 전에 가급적 빨리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 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할 수 있으며,

-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①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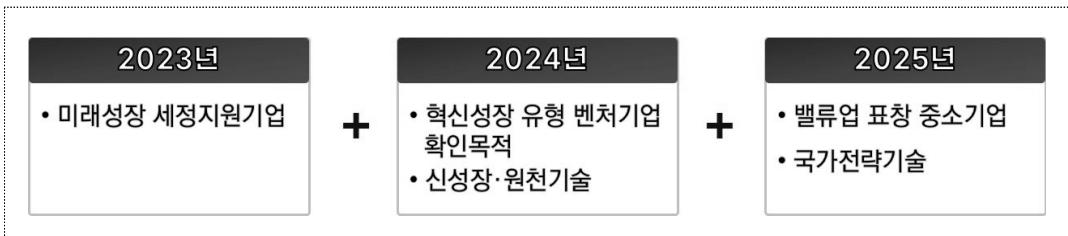
□ 국세청은 지난해 사전심사 결과를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게 우선처리 대상을 확대하였고, 심사 결과를 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개선하여 납세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 그 결과, 지난해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총 2,504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년) 1,547건 → ('21년) 2,332건 → ('22년) 2,439건 → ('23년) 2,440건 → ('24년) 2,504건

□ 올해는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에 ‘밸류업 표창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심사 신청기업을 추가하여 연구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 우선처리 대상 확대 /



- 연구개발과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개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명회, 납세자 세법교실 등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 사전심사 제도 소개, 인정·불인정 사례 등 교육 실시

□ 국세청은 이처럼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판단을 돕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

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도움자료

- (제도소개 등 관련 자료)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동영상 교육자료) 국세e교육원 > 납세자 세법교실 > 온라인교육 > 동영상교육 > 법인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성실 신고를 지원하고,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기업이 스스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문심사관이 진행하는 온라인설명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의 공동 설명회 등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 또한, 과기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협업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 부서 설립 단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그러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허위 연구소 설립, 타인 논문 복제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담인력이 정밀 분석·검증하여 부당공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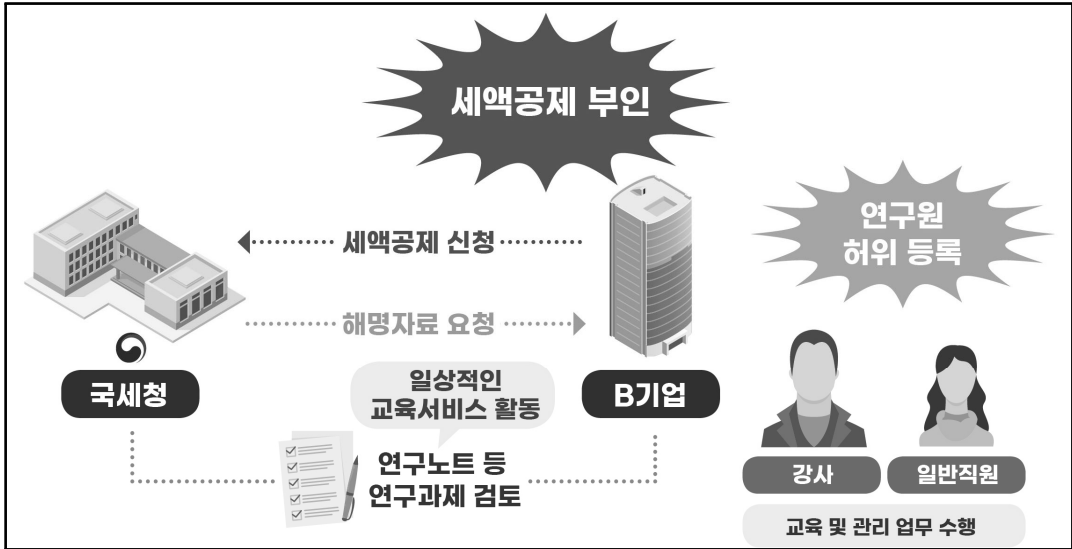
사례 1 타인 논문 등을 도용한 자료 제출하여 연구개발 활동 가장



- 부당공제 혐의
 - 재활의학 병원인 A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0천만 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
 - 연구 증거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연구개발 활동 없이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고 재활치료 장면 사진 모방, 검증 수치 단순 변형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한 것으로 가장
 - 또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제출한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등 연구개발 증거자료와 사후관리 해명자료를 용역계약 체결한 컨설팅 업체가 대리 작성해 주고, 사후관리 결과 세액공제가 부인되자 용역계약을 해제하는 등 불법 컨설팅 정황 포착

- 조치사항
 - ⇒ 연구개발 활동 없이 타인의 논문을 단순 인용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인건비 0천만 원 부인하고 0천만 원 추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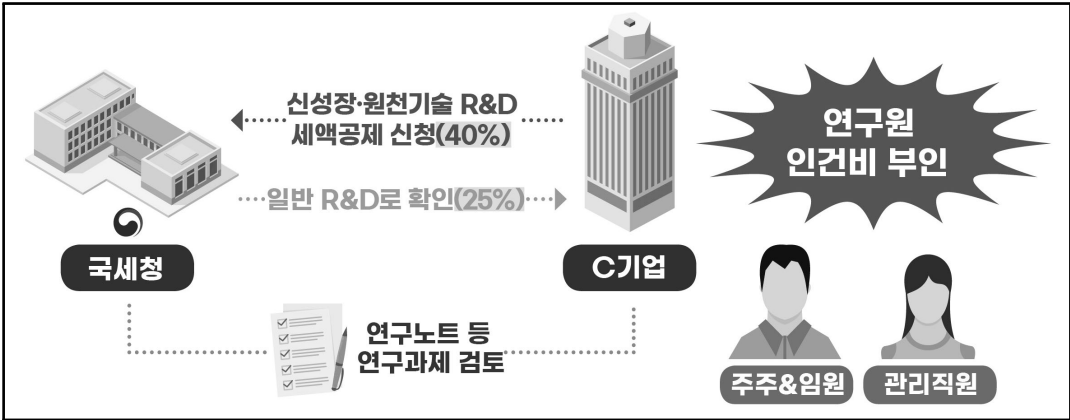
사례 2 일반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부당세액 공제



- 부당공제 혐의
 -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0천만 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 연구 증거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B기업이 수행한 활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활동으로 세법상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 홍보, 교육 운영 등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강사 및 일반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한 사실 확인

- 조치사항
 - ⇒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한 강사 및 일반직원의 인건비 0천만 원 부인하고 0천만 원 추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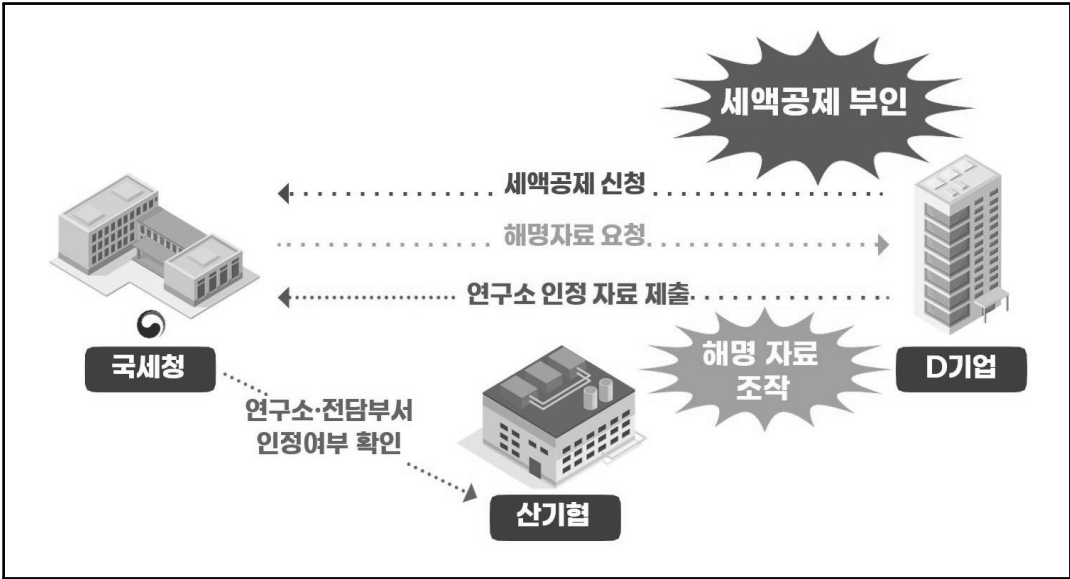
사례 3 **일반 연구개발을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로 공제**



- 부당공제 혐의
 - C기업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연구원의 인건비 0천만 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공제율 40%를 적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
 - 연구 증거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C기업이 수행한 활동은 일반 연구개발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기]의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연구원 중 주식 10% 초과 보유한 주주인 임원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확인

- 조치사항
 - ⇒ 주식 10% 초과 보유한 주주인 임원과 관리직원의 인건비 0천만 원 부인하고, 신성장·원천기술 적용한 연구개발비 0천만 원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 공제율 (25%) 적용하여 0천만 원 추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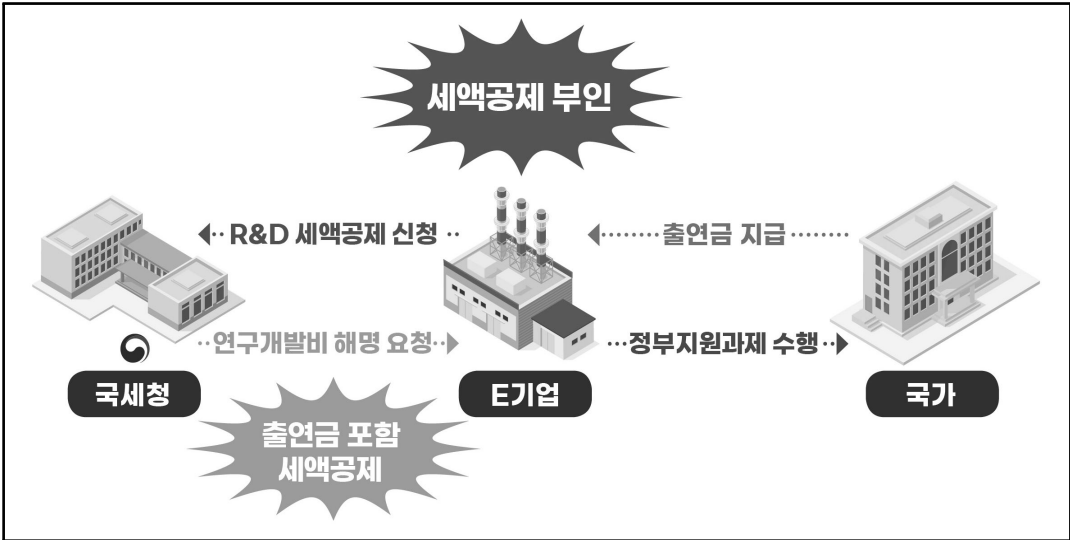
사례 4 **연구소 인정받지 않은 기업이 조작된 해명자료 제출**



- 부당공제 혐의
 - D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 0천만 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하였으나 연구소 인정 현황이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해 해명 요청함
 - D기업은 연구소 인정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으로부터 받은 연구소 인정 관련 내용을 해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명자료 내에서도 인정기간, 인정번호 등이 상이한 점을 발견
 - 이에 산기협에 문의한 결과, 해당 업체는 사후관리 대상기간 이전에 연구소를 자진 취소하였고, 그 이후 재인정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해명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한 정황 포착

- 조치사항
 - ⇒ 인정받지 않은 연구소의 연구원 인건비 0천만 원 부인하고 0천만 원 추정

사례 5 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 제외하지 않고 과다공제



- 부당공제 혐의
 - E기업은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해 정부지원과제를 수행하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출연금 0억 원을 수령
 -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서’에 출연금 수령 관련 현황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정부지원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였으나 세액공제 시 연구개발출연금을 포함하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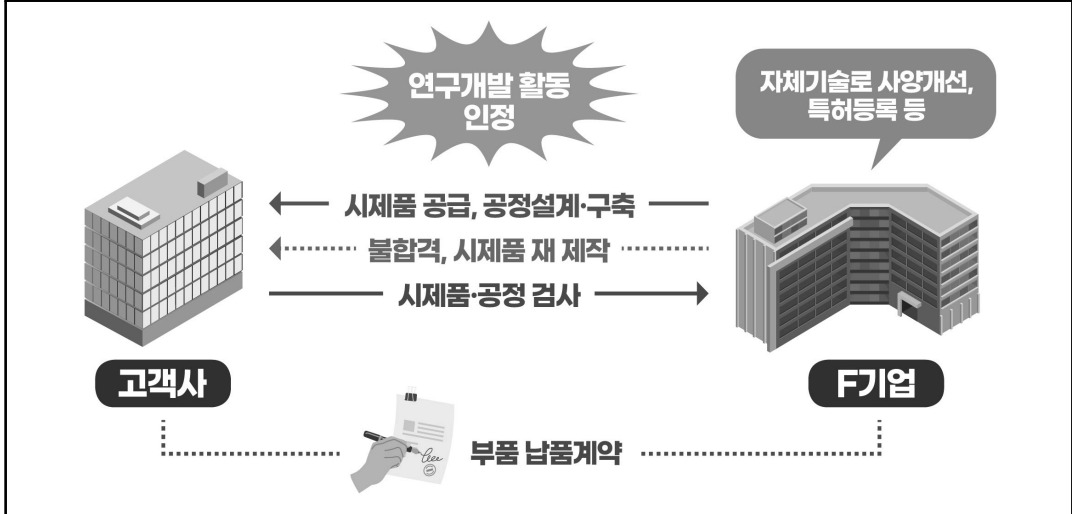
- 조치사항
 -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연구개발출연금 0억 원 세액공제 부인하고 0천만 원 추징

참고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

사례 1

고객사의 납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활동



□ 사실관계

- F기업은 고객사와 부품 납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한 활동에 참여한 연구원 인건비 0억 원을 사전심사 신청
- 연구개발 활동의 증빙으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시제품 제작과 공정을 설계·구축하고 고객사에 이를 검사받는 과정 등 여러 번의 시행착오 활동을 진행한 사실과 이 과정에서 특허등록 내역도 확인

□ 쟁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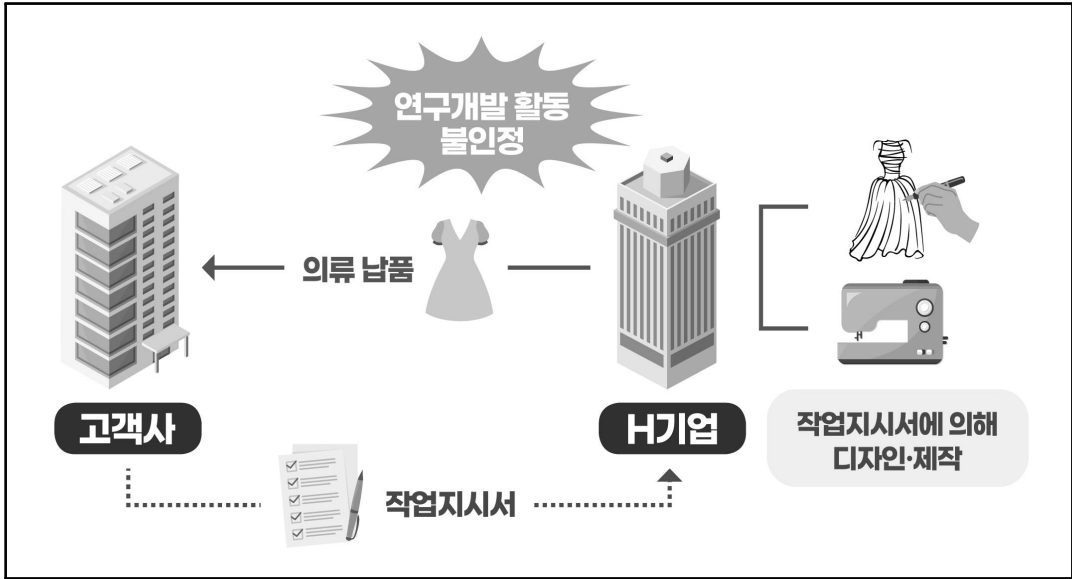
- 고객사의 납품 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결과

- 기업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제품 제작 및 공정 개선 등 시행착오를 거치고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특허)을 보유하는 등 납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은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여 적격 판정

사례 3

고객사의 작업지시서에 의한 단순 제작



- 사실관계
 - H기업은 고객사에 의류를 납품하기 위해 디자인을 진행하고,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0억 원을 사전심사 신청
 - 고유의 브랜드를 보유한 고객사의 디자이너가 작성한 작업지시서를 제공받아 디자인하고, 샘플 제작 등의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
- 쟁점사항
 - 작업지시서에 의한 의류 제품 디자인 개발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결과
 - 고객사의 작업지시서에 따른 디자인 도안 작성, 샘플 제작 등의 활동은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활동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 판정

참고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 (제도개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 축적 및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중 일부 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공제
- (공제대상) 내국인이 세법상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세법에서 정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 (공제율)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과 그 외 일반 연구개발을 구분하여 해당 지출비용의 최대 50%까지 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25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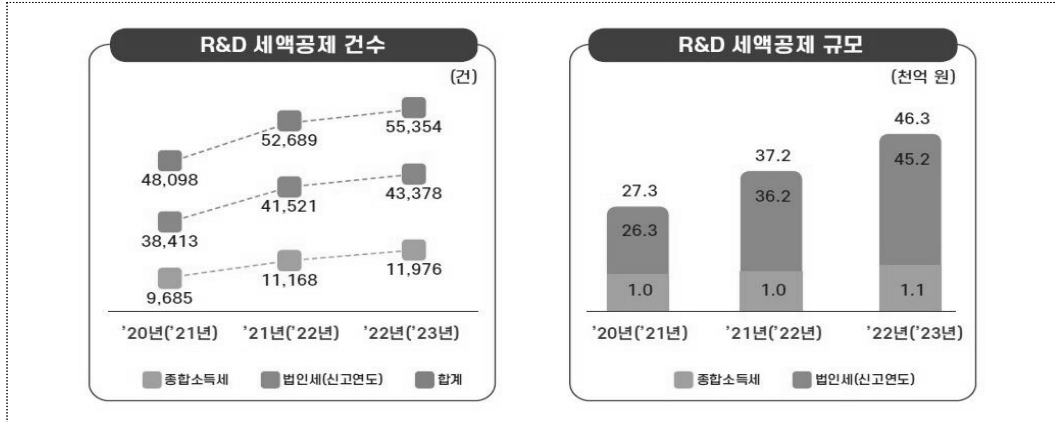
구 분(%)	기업유형			추가 ¹⁾
	일반	중견	중소	
일 반	0 ~ 2	8 ~ 20 ²⁾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³⁾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⁴⁾	40	최대 10

1) 최대 10% (R&D 지출액/매출액 × 3)
 2) (~3년)20%, (4~5년)15%, (6년~)8%
 3) (~3년)25%, (4년~)20%
 4) (~3년)35%, (4년~)30%

- (공제현황) '23년 4.6조 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제도 중 조세지출 규모 비중이 가장 큼
 -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꾸준히 확대 되는 등 지원이 강화되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신성장·원천기술) : ('10년) 신성장동력산업 10개 분야 46개 기술, 원천기술 18개 분야 45개 기술 → ('25년) 14개 분야 273개 기술
- (국가전략기술) : ('21년) 3개 분야 34개 기술 → ('25년) 7개 분야 71개 기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 /



참고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
- (신청대상)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각각의 과제별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고, 연구개발 활동 해당 여부 심사만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해당 신청 건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라도,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또는 재심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①심사 진행상황 확인, ②신청서류 제출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제공, ③사전심사 결과를 공유할 세무대리인 지정 등 다양한 편의기

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절차

- (심사 내용) 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법상 연구개발*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 (서면심사 원칙) 신청인 편의를 위해 비대면 서면심사 원칙
 - 제출된 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동의를 받아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사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사전심사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 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결과 통지)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신청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 함께 통지하여 신고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재심사 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신청 가능합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3월 7일(금)	3월 10일(월)	3월 11일(화)	3월 12일(수)	3월 13일(목)
미 달 러 (USD)	1441.60	1446.30	1451.50	1457.90	1452.00
일 본 엔 (JPY)	974.28	980.54	988.29	986.00	979.86
영 국 파 운 드 (GBP)	1857.72	1869.85	1869.02	1887.76	1882.52
캐 나 다 달 러 (CAD)	1008.75	1005.84	1005.44	1010.47	1011.14
홍 콩 달 러 (HKD)	185.49	186.11	186.85	187.62	186.89
위 안 화 (CNH)	198.84	199.55	200.13	201.01	200.72
유 로 화 (EUR)	1555.92	1569.52	1573.57	1591.44	1581.01
호 주 달 러 (AUD)	913.25	910.66	910.60	918.19	918.68
싱 가 폴 달 러 (SGD)	1081.92	1087.53	1088.49	1095.75	1089.84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325.60	327.59	328.13	330.36	327.73